

2020년 상반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검역지원과 **최고은, 손태중, 김금찬***

*교신저자 : kimgchan@korea.kr, 043-719-9200

초 록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검역소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승무원을 대상으로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해외 발생동향에 따라 주기적으로 연 2회 현행화하여 시행하는 한편, 갑작스런 검역감염병 유행 발생 시에는 수시 지정할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 시행되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콜레라 19개국, 페스트 2개국, 황열 42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 10개국, 폴리오 9개국).

*검역감염병이 중복 지정된 국가는 1개국으로 계산

주요 검색어 : 검역감염병,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검역

들어가는 말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이 국내 유입·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지역에 13개 국립검역소와 11개의 지소를 설치하여 운송수단, 사람, 화물에 대한 검역(檢疫)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검역법」 제2조(정의), 제5조(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5조의 2 (오염인근지역의 관리)에 따라 검역감염병 9종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 7종¹⁾의 발생 지역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와 동법 제15조의 검역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본 원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오염지역

(오염인근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덧붙여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을 방문·체류·경유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검역 관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몸 말

질병관리본부는 관련법령²⁾에 근거하여 현재 국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 7종의 발생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며, 해당 지역을 방문·체류·경유하는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입국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1년간 국외 발생동향 및 감염병별 위험도 평가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1)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 에볼라바이러스병

2) 「검역법」 제5조(오염지역 지정 및 해제), 제5조의2(오염인근지역의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오염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2조2(오염인근지역의 관리).

연 2회³⁾ 변경·시행하고 있으며, 검역 감염병이 해외에서 대규모로 유행 발생하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하는 경우와 같이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감염병 발생 정보는 세계보건기구(WHO) 및 해외 현지공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검역감염병 발생보고가 없는 경우처럼 오염지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오염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또한, 현재 검역감염병이 발생하는 국가는 아니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문화적·지리학적으로 교류가 빈번하여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검역감염병 '오염인근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지역'과 대등한 검역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검역감염병 중 중증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라 칭함)에 대해 '오염인근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바레인, 카타르 등 중동지역 7개국이 해당된다(2020.1.1. 기준).

1. 2018년 하반기에서 2019년 하반기까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동사항

2018년 9월 8일 쿠웨이트 방문자 1명이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9월 9일 쿠웨이트를 메르스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메르스 발생보고가 없더라도 메르스 오염지역 지정 국가와 가까운 중동국가에 대한 검역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메르스 오염지역을 4개국, 오염인근지역을 6개국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한편, 반기별 변경 주기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현행화하여 실시하던 중,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지속⁴⁾으로 인해 7월 18일 세계보건기구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을 선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검역법」 제2조(정의)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보건복지부고시

표 1.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 현황(2020.1.1. 기준, 총 65*개국)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오염인근지역
콜레라 (19)	- (아시아, 중동) 예멘, 필리핀, 인도 - (아프리카)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우간다, 탄자니아, 소말리아, 모잠비크, 잠비아, 카메룬, 니제르, 짐바브웨, 부룬디, 에티오피아, 수단 - (아메리카) 아이티	-
페스트 (2)	-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
황열 (42)	- (아프리카) 29 개국(앙골라,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등) - (아메리카) 13 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1)	- (아시아) 중국 (4개 지역; 광둥성,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	-
중증호흡기증후군(10)	-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 (중동) 카타르, 예멘, 바레인, 요르단, 이란, 레바논, 쿠웨이트
에볼라바이러스병(1)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
폴리오(9)	- (아시아, 중동)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니제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	-

* 검역감염병 중복 지정국가는 1개국으로 계산

3) 반기별 연2회 시행(시행일 1.1., 7.1).

4) 콩고민주공화국 North Kivu주 및 Ituri주에서 총 2,428명 발생(확진 2,334명, 사망 1,641명, 2018.5.11.~20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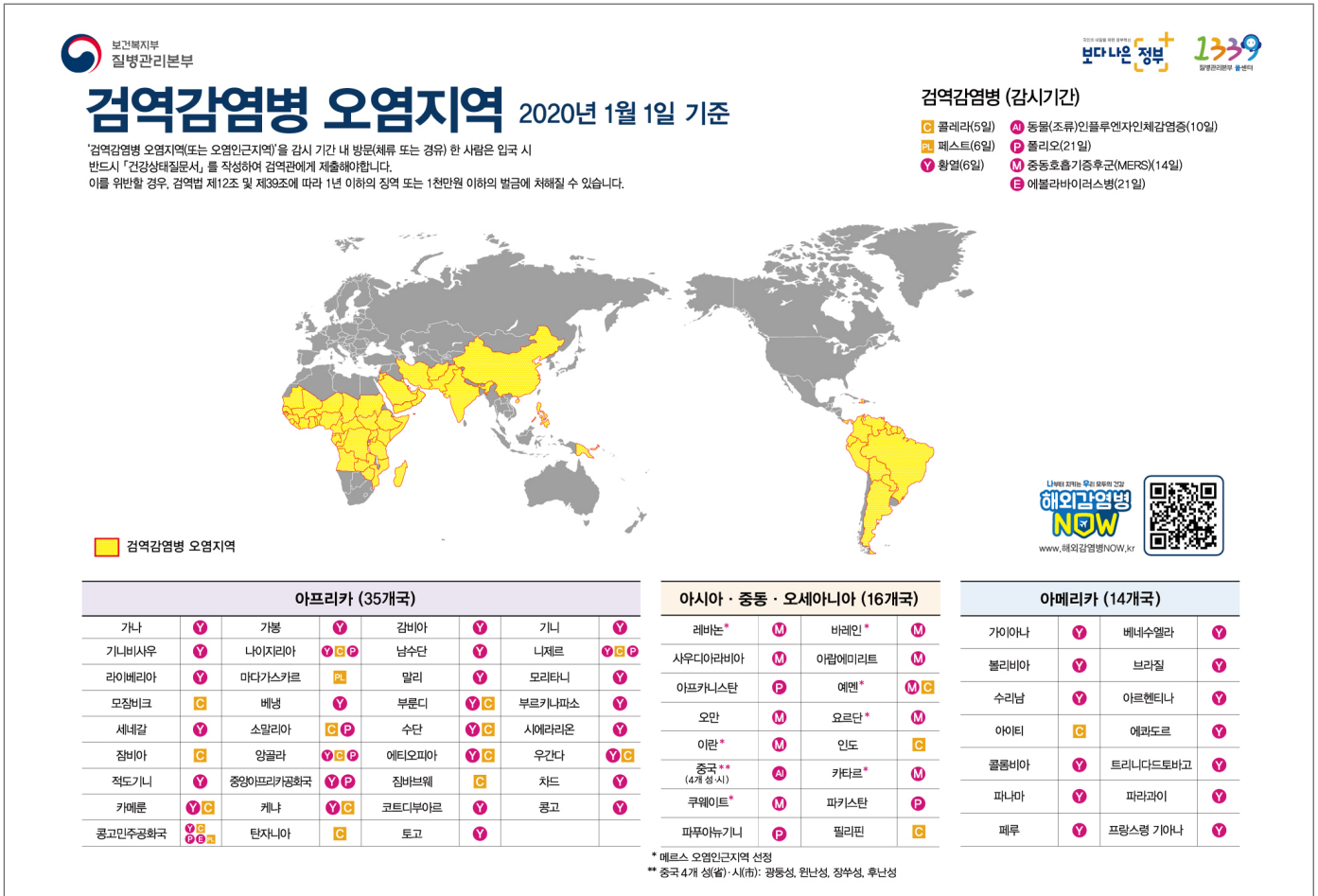


그림 1. 2020년 1월 1일 시행되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

제2016-244호)에 의거하여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에 포함하고, 콩고민주공화국⁵⁾을 에볼라바이러스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검역감염병 7종 오염지역 66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승객·승무원 대상으로 검역을 수행하였다.

2. 2020년 상반기 시행되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 변경 사항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포함)은 기존 66개국에서 65개국으로 변경된다(표 1, 그림 1).

최근 1년간(2018.11.1.~2019.10.31.)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를

토대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변경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콜레라의 발생보고가 없었던 말라위, 알제리가 오염지역에서 해제되고, 콜레라가 유행·발생한 아이티, 브룬디, 에티오피아, 수단은 콜레라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콜레라 오염지역은 17개국에서 총 19개국으로 변경 시행된다.

페스트 오염지역의 경우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발생보고가 있었던 콩고민주공화국이 오염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시행된다. 참고로 콩고민주공화국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검역감염병 5종(콜레라, 페스트, 황열, 폴리오,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폴리오의 오염지역의 경우 이전 8개국에서 총 9개국으로 변경 시행되며, 앙골라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새로 지정되고 케냐는

5)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외에 검역감염병 3종(콜레라, 황열, 폴리오)으로 오염지역 지정된 국가임.

폴리오 오염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하 시라 칭함)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오염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환자 발생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시 오염지역은 기존 중국 5개 성·시 중 광시좡족자치구가 해제되어 4개 성·시(광둥성,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로 축소되어 시행된다.

한편, 쿠웨이트는 2018년 9월 쿠웨이트 방문자에 의한 국내유입사례 발생으로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1년간 추가 발생보고가 없음에 따라 '오염지역'에서 '오염인근지역'으로 변경되어 시행된다.

그 외 검역감염병인 에볼라바이러스병(1개국) 및 황열(42개국)의 오염지역은 변경 사항 없이 유지된다.

3.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관리

국립검역소는 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병별 위험도에 따라 일반검역과 집중검역으로 차등화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운송수단(선박·항공기)의 장은 보건상태신고서를 국립검역소에 제출하여 운송수단 내 감염병 의심증상자 또는 감염병 매개체 발생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사전 설치된 열 감지 카메라를 통해 발열여부를 모니터링 받게 된다.

또한 감염병별 위험도에 따라, 검역감염병 중 국내 유입 및 유행 발생 위험도가 낮은 검역감염병(AI, 황열 등)의 오염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과 같이 국내 유입 시 공중보건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집중검역을 수행한다.

검역관은 메르스 및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오염지역을 방문·체류

후 직항노선 운송수단을 통해 감시기간⁶⁾ 내 입국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승객들이 내리는 주기장 게이트에서 입국자의 개별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한다. 또한,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유증상자조사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등 검역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메르스·에볼라 오염지역 방문 후 오염지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⁷⁾를 통해 경유 입국자의 오염지역 방문정보를 수집하고,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해당 입국자에게 검역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일대일(1:1) 검역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집중검역은 오염지역뿐 아니라 오염인근지역의 입국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되고 있다.

입국자 중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의 경우에는 검역관이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역학조사관에게 인계하여 감염병과 역학적 연관성을 검토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한다.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되며 메르스, 에볼라 등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 의심환자로 분류될 경우 국가지정치료병상으로 이송·격리 및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12월 22일 기준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326명으로 이 중 31명이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의심환자로 분류되었다. 의심환자로 분류된 총 326명 모두 최종적으로 메르스 음성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출·입국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의 검역수행뿐 아니라 여행 전·후 감염병 예방 안내 등 홍보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2019년 하반기 해외여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외감염병 정보제공 홈페이지(해외감염병 NOW; <http://해외감염병now.kr>)를 개설하여 국가별 감염병 발생 정보 제공 및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협력하여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출국자에게 오염지역 도착 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감염병 예방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입국 후에도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5)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외에 검역감염병 3종(콜레라, 황열, 폴리오)으로 오염지역 지정된 국가임.

7) 이동통신 3사 해외로밍정보,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외교부 여권정보, 항공사의 승객 정보 등

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ITS)을 통해 환자의 해외 방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진료·처방단계에서 환자의 해외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외감염병 의심환자를 조기 파악하여 조치하도록 돕고, 나아가 감염병 의심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및 유행을 조기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맺는 말

질병관리본부는 효율·효과적 검역 수행을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을 주기적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오염지역 지정을 위해서 해외감염병 발생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외 발생감염병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병 관리 부서와의 논의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해당 정보가 여행자들에 시기적절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변경 시행일 약 한 달 전부터 유관부처기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외교부 및 항공사, 여행업협회 등)에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의 정보가 담겨있는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오염지역 변경사항을 게재하고,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을 방문·체류·경유한 입국자는 「검역법」 제6조(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 및 제29조의3(신고의 의무)에 따라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발열, 설사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및 검역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한편,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역법」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해외여행객들에게 적시 제공하고,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등 필요 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입국자

검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지난 주간 건강과 질병, 제12권 제26호에서는 2019년 하반기 검역 감염병 변경사항에 대해 다루었으며, 해외 발생 중인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 현황 및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검역수행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오염지역 지정 경과 및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지정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 시행되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과 변경된 오염지역을 기준으로 검역 감염병 차단을 위한 국가 검역이 수행됨을 소개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검역소는 현장 검역뿐 아니라, 출·입국 전후 감염병 예방 안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③ 시사점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지정은 차등화된 검역수행의 기초가 되므로 앞으로도 오염지역 지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감염병NOW.kr 홈페이지 안내 리플릿]



‘해외감염병 예방
우리 모두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www.해외감염병NOW.kr

해외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검역 서비스

해외감염병NOW.kr
여행지별 감염병 발생상황 및
예방정보 제공

문자메시지 발송
주요 감염병 발생국 방문자 대상
예방사항 안내(현지 도착, 귀가 후)

입국검역
여행자 건강 확인 및 필요 시
감염병 진단검사 실시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해외여행 후, 발생한 감염병
의심증상 상담



해외감염병
NOW

질병관리본부가 알려주는
건강한 해외여행 꿀팁
www.해외감염병NOW.kr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 NOW.kr 방문은 필수!

해외여행 중,
지켜야 할 건강수칙

해외여행 후,
감염병 의심증상 조치

여행지 감염병 확인!



www.해외감염병NOW.kr

STEP 1

여행지 검색

STEP 2

감염병 상황
확인

STEP 3

예방접종 및
예방수칙 숙지

- 출국 최소 2주 전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예방접종과 예방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기저질환자의 경우 여행 전 전문의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해열제, 지사제, 소화제, 소독약, 반창고 등 간단한 비상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이것만은 꼭!

안전한 음식·물 마시기
덜 익은 음식, 비위생적인 음식은 먹지마세요
물은 되도록 제품화되어 있는 물을 드세요

자주 손씻기
식사 전, 외출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모기 주의
모기피해제 사용,
외출 시 긴소매, 긴바지, 모자를 착용해주세요

동물 접촉 피하기
낙타, 닭, 원숭이, 박쥐 등의
현지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세요

기타 주의사항

- 여행 중 발열, 설사, 구토 등이 있을 경우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세요
- 기침, 발열 등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세요
- 동물에게 물리거나 상처가 생겼을 시, 상처부위를 깨끗이 씻고 즉시 병원에 방문하세요
- 가벼운 상처가 생겼을 시 즉시 물로 깨끗이 씻고 소독하세요

귀국 시 공항에서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세요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검역법 제 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발열,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입국 시 검역대의 검역관에게 꼭 제출하세요

귀가 후에

- 여행 후, 21일 이내에 발열,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세요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검역법령집. 2018.
2. 질병관리본부. 2019 검역업무 지침. 2019.
3.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검역대응 표준매뉴얼. 2018.
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메르스(MERS) 대응 지침(제5-2판). 2019.
5. 최고은, 손태종, 박기준. 2019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 . 주간 건강과 질병. 2019;26(12):862-867.

Abstract

2020 Guide to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Choi Go-Eun, Son Tae-Jong, Kim Gueum-Chan

Division of Quarantine Support, Center for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KCDC

To prevent the inflow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to protect people from domestic and global health threats,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designates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twice a year and conducts quarantine inspections of passengers (both nationals and foreigners) from high-risk areas.

Passengers (regardless of citizenship or nationality) are advised to check the most recent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guide before departure. In addition, passengers are encouraged to submit a health questionnaire to a quarantine office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if they have passed through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i.e. those adjacent to a MERS-risk area).

From January 1, 2020, the number of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i.e., those adjacent to a MERS-risk area) has shifted from 66 to 65 countrie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quarantinable diseases and the number of countries they are in; cholera, 19; plague, 2; yellow fever, 42; avian influenza, 1;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10; and polio, 9, respectively.

*Some countries have overlapping areas with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Keywords: Quarantine,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Table 1.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and 'Adjacent to quarantinable disease-affected areas'

Quarantinable diseases	Risk areas	Adjacent to quarantinable disease-affected areas
Cholera (19)	- (Asia, Middle East) Yemen, Philippines, India - (Africa) Angol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Kenya, Nigeria, Uganda, Tanzania, Somalia, Mozambique, Zambia, Cameroon, Niger, Zimbabwe, Burundi, Ethiopia, Sudan - (Americas) Haiti	-
Plague (2)	- (Africa) Madagascar,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
Yellow Fever (42)	- (Africa) 29 countries including Angola, Ethiopia, Kenya, Nigeria - (Americas) 13 countries including Argentina, Brazil, Colombia, Peru	-
Human infection with Avian Influenza (1)	- (Asia) China (4 districts: Guangdong, Hunan, Jiangsu, Yunnan)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coronavirus (10)	- (Middle East) Saudi Arabia, Oman, United Arab Emirates (UAE)	- (Middle East) Qatar, Yemen, Bahrain, Jordan, Iran, Lebanon, Kuwait
Ebola virus disease (1)	- (Afric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Polio (9)	- (Asia, Middle East) Pakistan, Afghanistan - (Afric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Angola, Nigeria, Somalia, Niger, Central African Republic - (Oceania) Papua New Guinea	-

* Some countries have overlapping areas with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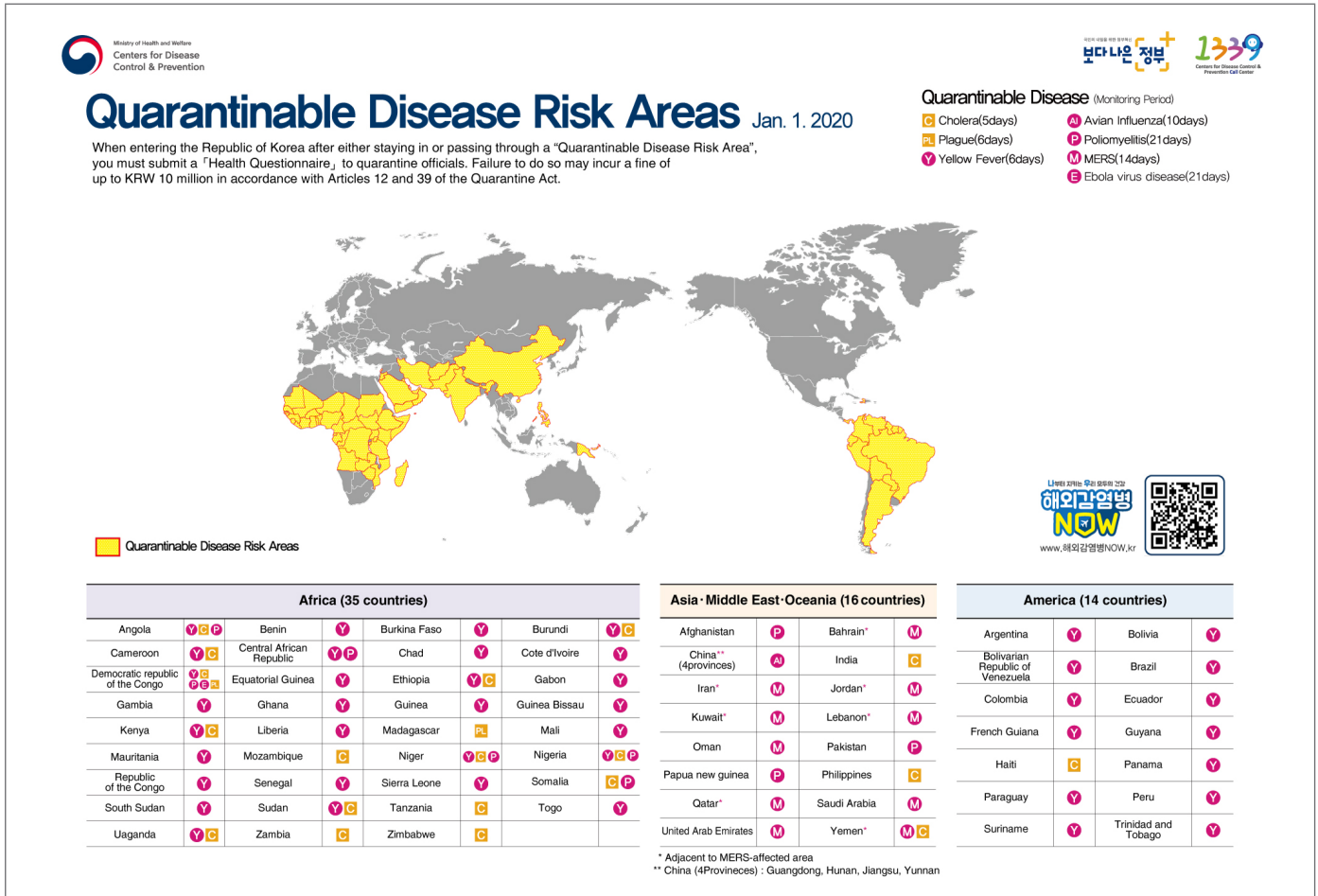


Figure 1. The updated guide to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and 'Adjacent to Quarantinable Disease-Affected Areas'